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24 선고 2023가단38012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5. 17.

판 결 선 고 2024. 5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효연

별지